

민간 부설주차장 공공개방 지원제도 확대 건의안

(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민간 부설주차장 공공개방 지원제도 확대 건의안

(전홍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
----------	----

발의연월일 : 2026. 7. 9.

발 의 의 원 : 전홍표 · 문순규 · 박해정 · 박현재 · 이우완
지상록 의원(6명)

찬 성 의 원 : 백승규 · 서명일 · 정순욱 · 진형익 의원(4명)

1. 제안 이유

- 주차난은 시민의 상권 방문을 어렵게 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와 골목상권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불법주정차는 보행 안전과 교통흐름을 저해하여 생활환경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공영주차장 신설은 토지매입비와 건설비가 막대하게 소요될 뿐 아니라, 고밀도 도심지역에서는 적정 부지 확보 자체가 어려움. 설령 부지를 확보하더라도 토지 보상, 도시계획 검토, 예산 확보, 설계, 각종 행정절차 이행, 공사 기간 등으로 인해 단기간에 주차난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현행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운영손실 보전, 시설개선비, 보험료, 관리비, 사고책임, 장기주차 문제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부족함
- 따라서 민간 부설주차장 공공개방 지원사업을 국가 차원의 생활 SOC 사업으로 확대하고, 관련 법령과 재정지원 기준을 정비하여 도심상권 주차난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기존 민간 주차자원을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국가 차원의 생활 SOC 사업으로 확대해야 함
- 민간 부설주차장을 시민에게 개방할 경우 발생하는 운영손실, 시설 개선비, 보험료,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함
- 「주차장법」 및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개방주차장의 운영·관리·책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함
- 전통시장, 골목상권, 대학가, 생활상권 인근의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력하여 상권 활성화 정책과 연계 추진할 것을 건의함
- 지방자치단체가 개방주차장 시설 유지관리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협약서, 표준조례안, 보조금 산정기준, 손해배상 및 보험 기준 등의 지침을 마련해야 함

3. 건 의 문: 붙임

4. 수 신 처: 대통령(비서실장), 대한민국국회의장, 국무총리(의전비서관),
기획예산처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민간 부설주차장 공공개방 지원제도 확대 건의문

마산합포구는 오랜 도시 형성과정에서 주거지와 상업지가 밀집되어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땃거리, 월영상가, 뒤텔거리 일대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살아가는 대표적인 생활상권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음에도 공영주차시설이 부족하고, 신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도 매우 제한적입니다.

주차난은 단순한 교통 불편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민은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상권 방문을 포기하고, 소상공인은 고객 접근성 저하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는 보행안전을 위협하고 교통흐름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골목상권의 경쟁력까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신설은 토지매입비와 건설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특히 마산합포구와 같이 이미 도시가 고밀도로 형성된 지역에서는 적정 부지를 확보하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설령 후보지를 찾는다 하더라도 토지 보상, 도시계획 검토, 예산 확보, 설계, 행정절차 이행, 공사 기간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민과 상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주차난을 공영주차장 신설만으로 단기간에 해결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분명합니다.

따라서 당장의 주차 불편을 줄이고 상권 접근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주차장을 짓는 방식과 함께 이미 지역 내에 존재하는 민간 부설 주차장을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현재 땃거리와 월영동 일대에는 롯데마트, 탑마트 등 민간 상업시설 주차장이 존재합니다. 이들 주차장을 일정 시간, 일정 면수에 한해 시민에게 개방하고, 이용요금은 공영주차장 수준으로 적용한다면 신규 주차장 건설 없이도 즉각적인 주차공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 편의 증진, 불법주정차 감소, 상권 활성화, 예산 절감이라는 공공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입니다.

현행 「주차장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개방시간, 보조금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발생하는 운영손실, 시설관리 부담, 사고책임, 보험료, 장기주차 문제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에 창원시의회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기존 민간 주차자원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부설주차장 공공개방 지원사업을 국가 차원의 생활SOC 사업으로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민간 부설주차장 공공개방에 대한 운영손실 보전, 시설 개선비, 보험료,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상당 부분 맡겨진 사항을 국가 차원의 표준을 만들어 「주차장법」 및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개방 주차장의 운영·관리·책임 기준을 명확히 하라.

하나. 정부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력하여 전통시장, 골목상권, 대학가, 생활상권 인근의 민간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을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과 연계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방주차장 시설 유지관리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표준협약서, 표준조례안, 보조금 산정기준, 손해배상 및 보험 기준 등의 지침을 마련하라.

마산합포구의 주차난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생활문제입니다. 공영 주차장 신설만으로는 시간과 예산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기존 민간 주차장을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제도는 가장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안입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시민의 주차 편의 증진, 골목상권 회복, 불법주정차 감소, 예산 효율화를 위해 민간 부설주차장 공공개방 지원제도의 확대와 법령 정비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026년 7 월 일

창 원 시 의 회